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개정판
2판

연계 안내서



CHAPTER

01 울산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I. 치매전달체계_기관별 역할 안내	32
- 광역지자체(울산광역시)	
- 광역치매센터	
- 기초지자체(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II.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33

CHAPTER

02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서비스

I. 공통 서비스	36
01. 등록관리	36
02. 치매조기검진	38
II. 치매 고위험군 서비스	40
01.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40
02. 치매예방교실 운영	40
03. 인지강화교실 운영	41
III.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42
0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2
02. 조호물품 제공	43
03. 실종어르신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44
0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사업	45
05. 치매공공후견	45
06. 치매환자쉼터	47
IV. 치매환자 가족지원 서비스	48
01. 가족교실 운영	48
02. 자조모임 운영	48
03. 힐링프로그램	49
04.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49

CONTENTS

03 노령층 지원 복지 서비스

I. 생활지원	52	IV. 돌봄 지원	85
01. 기초연금제도	52	0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5
02.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	53	02.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86
03. 노후준비서비스	55	0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88
04.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56	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90
05. 긴급복지 지원제도	58	0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92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60	06.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93
0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60	07.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 도우미, 행복 나눔이_가사 도우미)	96
08. 경로식당	61		
09. 푸드뱅크, 푸드마켓	62	V. 사회참여 지원	97
10. 정부양곡 할인 지원	62	01. 어르신 정보화 교실	97
II. 건강지원	64	02. 디지털 배움터	97
01. 국가건강검진제도	64	03. 노인복지관 이용	98
0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66	04. 경로당 이용	99
0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67	05.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100
0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68	06. 온가족 보듬사업	101
05. 노인틀니 지원	69	07.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02
06.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70		
0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71	VI. 법률 지원	103
0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72	01. 법률구조 제도	103
0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73	0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105
III. 고용·일자리 지원	75	03. 무료법률상담	106
0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75	04. 성년후견제도	107
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7	VII. 정신건강 지원	109
0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9	01. 정신건강복지센터	109
04.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80	0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12
0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81		
0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2		

CHAPTER 02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서비스

신규대조표

I. 공통 서비스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등록 관리	36	- 등록 및 관리	<사업명 변경> - 등록관리
		-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 확인	<추가>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작성(미동의 시 등록 불가), 처방전 확인
	37	-	<추가> ·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가능범위 및 구비서류 - 치매환자의 친족, 후견인, 재직자, 가족 후견인 외 보호자
치매 조기 검진	38	- 경도인지장애, 만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 독거 어르신은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상담 등 집중검사 및 관리가 필요	<변경> -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고위 험군으로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상담 등 집중 검사 및 관리가 필요
		· 수행절차	<내용 구체화> · 일반조기검진 사업 - 검진대상 / 수행절차 · <u>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u> - 수행절차 / 대상 / 검진주기
		· 검진주기 - 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 마다 실시	<추가> · 검진대상 - <u>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시민</u>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검진대상자 (치매 미진단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선별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정상 인지저하자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2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2년 후 선별검사 1년 후 진단검사 감별검사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2년 후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제공 1년 후 진단검사, 인지강화교육 제공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검진대상자(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선별검사(RBT)</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정상 인지저하자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2년 후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제공) 진단검사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진단검사(단계 신경심리검사, 2단계 전문의 진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2년 후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제공) 1년 후 진단검사 (인지강화교육 제공) 감별검사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치매 확인 다른 원인에 의한 인지저하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치매지원서비스 제공</p> </div>	<검사내용 구체화>

치매 조기 검진	39	-	<집중검진 내용 추가> · 치매고위험군 서비스(집중검진) 부분 페이지 변경 -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	----	---	---

II. 치매고위험군 서비스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만 75세 이상 독거노인</p> <p>↓</p> <p>선별검사</p> <p>↓</p> <p>정상 인지저하</p> <p>↓</p> <p>1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만 75세 진입자</p> <p>↓</p> <p>선별검사</p> <p>↓</p> <p>정상 인지저하</p> <p>↓</p> <p>2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p> </div> </div>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만75세 이상 독거어르신 - 당해연도 주민등록상 만75세에 진입한 어르신 검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검사를 실시한 다음 해 선별검사 재실시 ※전년도 선별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당해연도 집중검진 대상자일 경우 선별검사 실시 	<변경> · 수행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p> <p>↓</p> <p>1년 후 선별검사</p> <p>↓</p> <p>정상 인지저하</p> <p>↓</p> <p>2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p> <p>↓</p> <p>1년 후 진단검사</p> <p>↓</p> <p>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p> <p>↓</p> <p>2년 후 선별검사 1년 후 진단검사 관행검사</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되었으나 1년 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 -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으로 검진결과를 받은 자 검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저하’ 자는 선별검사 실시한 다음 해 선별검사 재실시 - ‘경도인지장애’ 자는 진단검사 실시한 다음 해 진단검사 재실시 ※대상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 주기 조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인지 저하 의심’ 자는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 교실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예방교육 콘텐츠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 	<추가>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예방관련 교육 콘텐츠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실시 등
인지강화 교실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훈련을 위한 워크북 및 콘텐츠 활용 교육 	<추가>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훈련을 위한 워크북 및 콘텐츠 활용교육, 사전·사후 평가 실시 등

III.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42	-	<추가> · <u>지원대상</u> - <u>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0세 이상</u> <u>치매어르신</u>
조호물품 제공	43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단, 시설입소자의 경우 제외 (기존에 제공받던 시설입소자는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변경>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어르신 ※재가 치매어르신이 <u>노인요양시설</u> <u>입소 또는 의료 기관에 1개월 이상</u> <u>입원할</u> 경 경우, 해당 입소시설 지원 물품과 중복지원 불가
실종 어르신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44	· 사업명 - 실종예방(지문 등 사전등록,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배회감지기 보급)	<변경> · <u>실종어르신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u>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45	· 사업명 - 맞춤형사례관리	<변경> · 사업명 -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목적 - 치매어르신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심리·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함 으로서 삶의 질 향상	<변경> · 목적 - 치매어르신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u>체계적으로</u> <u>개입·중재함</u> 으로써 <u>안정적 지역사회</u> <u>거주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u>

치매 환자 쉼터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장기이용서비스 미신청 및 미이용자, 인지지원등급자) 	<p><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u> · <u>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대기자 포함)</u> ·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인지강화 교실 프로그램, 사전사후평가 실시 등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효과 검증된 인지자극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실시 등</u>

신구대조표

I. 생활지원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기초연금 제도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선정기준액</th> <th colspan="2">월 최대 지원 금액</th> </tr> <tr> <th>단독가구</th> <th>부부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소득 하위 70%</td> <td>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td> <td>월 최대 30만 7,500원</td> <td>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선정기준액</th> <th colspan="2">월 최대 지원금액</th> </tr> <tr> <th>단독가구</th> <th>부부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소득 하위 70%</td> <td>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td> <td>월 최대 33만 4,810원</td> <td>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월 최대 33만 4,810원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월 최대 33만 4,810원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p>노후 간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p>	<p>54</p>	<p>·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통울산지사 (중구, 동구, 북구)052)290-6100 남울산지사(남구, 울주군) 1355</p>	<p><추가>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통울산지사 (중구, 동구, 북구)052)290-6100 남울산지사(남구, 울주군) 1355/052)226-2200</p>												
<p>간급복지 지원제도</p>	<p>58</p>	<p>·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p> <table border="1" data-bbox="360 617 772 89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소득</td> <td>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td> </tr> <tr> <td>재산</td> <td>·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이하, 농어촌 1억 3,000 만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이하, 농어촌 1억 3,000 만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p><변경> ·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p> <table border="1" data-bbox="772 617 1184 1248">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소득</td> <td>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67만 1,334원 /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td> </tr> <tr> <td>재산</td> <td>·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 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 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67만 1,334원 /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 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 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구분	지원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이하, 농어촌 1억 3,000 만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67만 1,334원 /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 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 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간접복지 지원제도	58 ~ 59	· 내용				〈변경〉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횟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횟수
주 지 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장비등 포함)	가구원수에 따른차등 지급(4인 기준)130만 4900원	최대 6회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장비등 포함)	가구원수에 따른차등 지급 (4인기준) 183만 3,5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할 수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따른 수대지급 (대도시4인 기준) 64만3200 원이내	최대 1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살비지원)	지역가구원 수에따른 수대지급 (대도시4인 기준) 66만2500 원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수에 따른차등 지급 (4인기준) 145만500 원이내	최대 6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지원 상한액내 살비지원)	가구원수에 따른차등 지급 (4인기준) 149만4100 원이내	최대 6회	
부 지 원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12 만4100원 중학생17만 4700 원/고등학생 20만7700 원및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4회*)	교육	초등학생12 만7900원 중학생18 만원/고등 학생21만 4000원 및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지원	월10만 6700원	최대 6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지원	월15만원	6회	
	해산비	출산지원	70만원 (쌍둥이출산 시140만원)	1회	해산비	출산지원	70만원 (쌍둥이출산 시14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지원	8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시 연체된전기 료지원	50만원이내	1회	전기요금	단전시 연체된전기 료지원	50만원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 프로그램으로연계및상담 등기타지원		횟수 제한 없음	민간기관· 단체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 프로그램으로연계및상담 등기타지원		횟수 제한 없음		

긴급복지 지원제도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구청 복지지원과 (☎052-290-4495) - 남구청 복지지원과 (☎052-226-6914) - 동구청 복지지원과 (☎052-209-3403) - 북구청 복지정책과 (☎052-241-7633) -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052-204-0844) · 2022년 달라진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및 연료비 지원 상향 -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2022.1.13.이후부터 적용) - 금융재산 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원 상향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구청복지지원과 (☎052-290-4495) - 남구청 복지지원과 (☎052-226-6914) - 동구청 복지지원과 (☎052-209-3406) - 북구청 복지정책과 (☎052-241-7633) -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052-204-0844) · 2024년 달라진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인상 · <u>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 복지 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u>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알려드립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1년 7월 1일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u> ※ <u>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u>

<p>은퇴금융 아카데미</p>	<p>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8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4시간, 총 8시간 또는 주4회)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 (1일 1~2시간, 총 1~4시간)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온라인으로 상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u> · <u>수강방법 :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은퇴금융) 채널</u> · <u>교육과정 : 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u> 																																																
<p>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p>	<p>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로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u>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 ※ <u>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 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u> 																																																
<p>경로식당</p>	<p>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비용(실비) · 운영현황 <table border="1" data-bbox="374 1364 758 1436"> <thead> <tr> <th>지역명</th> <th>전체</th> <th>시</th> <th>중구</th> <th>남구</th> <th>동구</th> <th>북구</th> <th>울주군</th> </tr> </thead> <tbody> <tr> <td>개소수</td> <td>36개소</td> <td>1개소</td> <td>11개소</td> <td>7개소</td> <td>6개소</td> <td>3개소</td> <td>8개소</td> </tr> <tr> <td>이용</td> <td>4,818명</td> <td>200명</td> <td>1,285명</td> <td>1,054명</td> <td>1,020명</td> <td>405명</td> <td>854명</td> </tr> <tr> <td>비용</td> <td>2,066명</td> <td>100명</td> <td>515명</td> <td>690명</td> <td>240명</td> <td>284명</td> <td>221명</td> </tr> </tbody> </table> 	지역명	전체	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개소수	36개소	1개소	11개소	7개소	6개소	3개소	8개소	이용	4,818명	200명	1,285명	1,054명	1,020명	405명	854명	비용	2,066명	100명	515명	690명	240명	284명	221명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무료), 기타(1식 1,000원) · 운영현황 : <u>개소수 변경 및 이용자수 삭제</u> <table border="1" data-bbox="786 1364 1170 1436"> <thead> <tr> <th>지역명</th> <th>전체</th> <th>시</th> <th>중구</th> <th>남구</th> <th>동구</th> <th>북구</th> <th>울주군</th> </tr> </thead> <tbody> <tr> <td>개소수</td> <td>36개소</td> <td>1개소</td> <td>12개소</td> <td>7개소</td> <td>5개소</td> <td>3개소</td> <td>8개소</td> </tr> </tbody> </table> 	지역명	전체	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개소수	36개소	1개소	12개소	7개소	5개소	3개소	8개소
지역명	전체	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개소수	36개소	1개소	11개소	7개소	6개소	3개소	8개소																																												
이용	4,818명	200명	1,285명	1,054명	1,020명	405명	854명																																												
비용	2,066명	100명	515명	690명	240명	284명	221명																																												
지역명	전체	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개소수	36개소	1개소	12개소	7개소	5개소	3개소	8개소																																												

경로식당	61	-	<p><추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대상: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60~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내용: 지역별 운영단체에서 대상자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건강 및 영양상태·육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p>·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90-3683)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62)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09-3436)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41-7194)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052-204-0925)</p>	<p><변경>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90-3683)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64)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09-3436)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41-7194)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p>																																										
푸드뱅크·푸드마켓	62	<p>· 울산광역시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명</th> <th>전체</th> <th>중구</th> <th>남구</th> <th>동구</th> <th>북구</th> <th>울주군</th> </tr> </thead> <tbody> <tr> <td>푸드뱅크</td> <td>8곳</td> <td>3곳</td> <td>2곳</td> <td>1곳</td> <td>2곳</td> <td>-</td> </tr> <tr> <td>푸드마켓</td> <td>17곳</td> <td>5곳</td> <td>4곳</td> <td>1곳</td> <td>3곳</td> <td>4곳</td> </tr> </tbody> </table>	지역명	전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푸드뱅크	8곳	3곳	2곳	1곳	2곳	-	푸드마켓	17곳	5곳	4곳	1곳	3곳	4곳	<p>· 울산광역시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명</th> <th>전체</th> <th>중구</th> <th>남구</th> <th>동구</th> <th>북구</th> <th>울주군</th> </tr> </thead> <tbody> <tr> <td>푸드뱅크</td> <td>8곳</td> <td>3곳</td> <td>2곳</td> <td>1곳</td> <td>2곳</td> <td>-</td> </tr> <tr> <td>푸드마켓</td> <td>5곳</td> <td>-</td> <td>1곳</td> <td>-</td> <td>-</td> <td>4곳</td> </tr> </tbody> </table>	지역명	전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푸드뱅크	8곳	3곳	2곳	1곳	2곳	-	푸드마켓	5곳	-	1곳	-	-	4곳
		지역명	전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푸드뱅크	8곳	3곳	2곳	1곳	2곳	-																																							
푸드마켓	17곳	5곳	4곳	1곳	3곳	4곳																																							
지역명	전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푸드뱅크	8곳	3곳	2곳	1곳	2곳	-																																							
푸드마켓	5곳	-	1곳	-	-	4곳																																							
		<p>·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푸드뱅크 콜센터(☎1688-1377)</p>	<p><추가>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푸드뱅크 콜센터(☎1688-1377) - <u>울산광역시푸드뱅크</u> (☎052-285-1378/052-286-5412)</p>																																										

정부양곡 할인지원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가격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산</th> <th>단량</th> <th>대상</th> </tr> </thead> <tbody> <tr> <td>'21년산 (국내산)</td> <td>10kg</td> <td>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td> </tr> </tbody> </table>	연산	단량	대상	'21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가격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산</th> <th>단량</th> <th>대상</th> <th>양곡대금 (개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1년산 (국내산)</td> <td rowspan="2">10kg</td> <td>생계·의료급여 수급자</td> <td>2,600원</td> </tr> <tr> <td>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td> <td>10,000원</td> </tr> </tbody> </table>	연산	단량	대상	양곡대금 (개인부담)	'21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	10,000원
	연산	단량	대상																
'21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산	단량	대상	양곡대금 (개인부담)																
'21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차상위계층	10,000원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 (구입 상한량 범위 내에서 포장단위 선택 구입 가능)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 (구입 상한량 범위 내에서 포장단위 선택 구입 가능) - 가구원수 산정기준 : <u>보장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수</u> * 예시)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u>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시~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매 제한</u> * 예시) 2인 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u>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u>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u>양곡전용계좌 확인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u> 절차안내 ①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③대상자 확정(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④이의신청접수(대상자) ⑤서비스 지원(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⑥서비스 사후관리(읍면동행정복지센터) 																	

II. 건강지원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국가건강 검진제도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건강보험제도 · 사업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요양 급여</td> <td>진찰·검사, 약·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td> </tr> <tr> <td>요양비</td> <td>·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 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I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td> </tr> <tr> <td>건강비</td> <td>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td> </tr> <tr> <td>임신·출산 진료비</td> <td>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을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원 추가 지급)</td> </tr> <tr> <td>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td> <td>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요양 급여	진찰·검사, 약·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 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I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을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원 추가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국가건강검진제도 · 사업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일반건강검진</u> - <u>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u> - <u>암검진</u>
	구분	지원내용													
요양 급여	진찰·검사, 약·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 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I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을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원 추가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실직, 퇴직시 지역 가입자로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u>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u>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66	-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구비서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 안과진료 소견서(수술한 병원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u>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	--	--

III. 고용·일자리 지원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면서 <u>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u> * <u>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인 중견기업은 기업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을 말함</u>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지급 - 담당업무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산업안전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대상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 정원 조성 및 관리 등 - 근무기간 및 임금 :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23년 주 평균 32시간 근무 (월 평균 166만원)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수당지급 - <u>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u> - 담당업무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산업 안전컨설팅, 소상공인 금융 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 귀촌대상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 근무기간 및 임금 :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23년 주 평균 32시간 근무 (월 평균 166만원)

IV. 돌봄 지원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88	· 건강지원	<서비스 분야 이동> · 돌봄지원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명 변경>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추가>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구체화> · 내용 -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설치를 통해 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한 후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	<추가> · 제공기능 - [음성기능]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 - [인공지능케어콜서비스]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90	·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td> <td>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td> </tr> </table>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변경> ·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td> <td>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td> </tr> </table>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p>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_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원 I</p>	<p>91</p>	<p>·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가능</p>	<p>·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23.4.1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가능</p>
<p>노인장기 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_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원 II</p>	<p>92</p>	<p>· 처리과정 ①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해지 (수급자)→②보험료 부과자료 등 조정 (건강보험)→③감경신청서 제출(관할 운영센터)→④해당요건 확인(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⑤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⑥감경 적용 시 환급(수급자)</p>	<p><추가> · 처리과정 ①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해지 (수급자)→②보험료 부과자료 등 조정 (건강보험)→③감경신청서 제출(관할 운영센터)→④해당요건 확인(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⑤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⑥감경 적용 시 환급(수급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등 제출</p>
<p>기타재가 급여(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_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원 III</p>	<p>93</p>	<p>-</p>	<p><추가> · 서비스 내용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2가지가 있으며,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해 지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 당 연 160만원 한도 지원</p>

기타재가 급여(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원 III	93	· 급여비용				〈변경〉 ·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연간 한도액	일반 대상자	본인 부담금 기초 생활 수급자	경감 대상자 (장애 등급 1,2급)	구분	일반 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60만원	15% (최대 본인 부담금 약24만원)	0%	75%	재가 급여	15%	75%	면제
						시설 급여	20%	10%	면제
						복지 용구 (기타 재가 급여)	15%	75%	면제

V. 사회참여 지원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어르신 정보화 교실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고령층 온라인 정보화 교육 · 사업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IT활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출 수 있도록 교육 사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u>어르신 정보화 교실</u> · 사업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령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생활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u>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스마트폰 또는 PC 관련 교육수강을 원하는 자</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교육비 : 회원제 운영</u>

<p>어르신 정보화 교실</p>	<p>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www.estudy.or.kr)에서 PC, 모바일, OA, 신기술 등 ICT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1577-683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홈페이지(www.estudy.or.kr)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779 266 1177 619"> <thead> <tr> <th>구분</th> <th>컴퓨터 과정</th> <th>동영상 편집과정</th> <th>스마트폰 활용과정</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강의 내용</td> <td>인터넷 기초/중급, 한글, 엑셀, PPT, 문서작성</td> <td>사진, 포토샵, 동영상, UCC</td> <td>스마트폰의 이해 및 각종 앱 활용방법</td> <td>유튜브 및 키오스크 활용법</td> </tr> <tr> <td>강의 시간</td> <td>월~금요일 (초,중급)</td> <td>주 3회</td> <td>주 2회</td> <td>수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u>교육관련 각 지역지부 문의 후 신청</u> ·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IC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02-2636-2990) - KWIC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부산지부(☎051-711-8254) 	구분	컴퓨터 과정	동영상 편집과정	스마트폰 활용과정	기타	강의 내용	인터넷 기초/중급, 한글, 엑셀, PPT, 문서작성	사진, 포토샵, 동영상, UCC	스마트폰의 이해 및 각종 앱 활용방법	유튜브 및 키오스크 활용법	강의 시간	월~금요일 (초,중급)	주 3회	주 2회	수시
구분	컴퓨터 과정	동영상 편집과정	스마트폰 활용과정	기타														
강의 내용	인터넷 기초/중급, 한글, 엑셀, PPT, 문서작성	사진, 포토샵, 동영상, UCC	스마트폰의 이해 및 각종 앱 활용방법	유튜브 및 키오스크 활용법														
강의 시간	월~금요일 (초,중급)	주 3회	주 2회	수시														
<p>디지털 배움터</p>	<p>97</p>	<p>-</p>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명: 디지털 배움터</u> · <u>사업설명</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역량강화 기회 제공 · <u>대상: 전 국민</u> · <u>내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u> · <u>방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u> · <u>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u> 															

경로당 이용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의 - 울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 (☎052-229-4834) - 울산광역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 (☎052-269-0025) -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052-269-0026)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의 - 울산광역시청 <u>보훈노인과</u> (☎052-229-4872) - 울산광역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 (☎052-269-0025) -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052-269-0026)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경로당 운영지원 기관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관명</th> <th>주소</th> <th>문의 (052)</th> </tr> </thead> <tbody> <tr> <td>노인 복지 시설</td> <td>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td> <td>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11, 4층</td> <td>269-0025</td> </tr> <tr> <td>협회·단체</td> <td>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td> <td>남구 거마로 5번길 27</td> <td>269-0026</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노인 복지 시설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11, 4층	269-0025	협회·단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거마로 5번길 27	269-0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경로당 운영지원 기관 현황:문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관명</th> <th>주소</th> <th>문의 (052)</th> </tr> </thead> <tbody> <tr> <td>노인 복지 시설</td> <td>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td> <td>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11, 4층</td> <td>269-0025</td> </tr> <tr> <td>협회·단체</td> <td>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td> <td>남구 거마로5번길 27</td> <td>269-0026</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노인 복지 시설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11, 4층	269-0025	협회·단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거마로5번길 27	269-0026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노인 복지 시설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11, 4층	269-0025																												
협회·단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거마로 5번길 27	269-0026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노인 복지 시설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11, 4층	269-0025																													
협회·단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남구 거마로5번길 27	269-0026																													
공공 기관	<table border="1"> <tbody> <tr> <td>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중구 단장골길 1</td> <td>290-3684</td> </tr> <tr> <td>울산남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남구 돌질로 233</td> <td>226-3083</td> </tr> <tr> <td>울산동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동구 봉수로 155</td> <td>209-3434</td> </tr> <tr> <td>울산북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북구 산업로 1010</td> <td>241-7194</td> </tr> <tr> <td>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td> <td>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td> <td>204-0921</td> </tr> </tbody> </table>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	중구 단장골길 1	290-3684	울산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남구 돌질로 233	226-3083	울산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 봉수로 155	209-3434	울산북구청 (노인장애인과)	북구 산업로 1010	241-7194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04-0921	<table border="1"> <tbody> <tr> <td>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중구 단장골길 1</td> <td>290-3686</td> </tr> <tr> <td>울산남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남구 돌질로 233</td> <td>226-3083</td> </tr> <tr> <td>울산동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동구 봉수로 155</td> <td>209-3438</td> </tr> <tr> <td>울산북구청 (노인장애인과)</td> <td>북구 산업로 1010</td> <td>241-7194</td> </tr> <tr> <td>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td> <td>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td> <td>204-0921</td> </tr> </tbody> </table>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	중구 단장골길 1	290-3686	울산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남구 돌질로 233	226-3083	울산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 봉수로 155	209-3438	울산북구청 (노인장애인과)	북구 산업로 1010	241-7194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04-0921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	중구 단장골길 1	290-3684																													
	울산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남구 돌질로 233	226-3083																													
	울산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 봉수로 155	209-3434																													
	울산북구청 (노인장애인과)	북구 산업로 1010	241-7194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04-0921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	중구 단장골길 1	290-3686																														
울산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남구 돌질로 233	226-3083																														
울산동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 봉수로 155	209-3438																														
울산북구청 (노인장애인과)	북구 산업로 1010	241-7194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04-0921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u>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u>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052-268-2971)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u>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u>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성에 맞춘 <u>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 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u>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2379) -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052-268-2971)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문화원 현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문화원 현황 : 주소 및 문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관명</th> <th>주소</th> <th>문의 (052)</th> <th>홈페이지</th> </tr> </thead> <tbody> <tr> <td>대표</td> <td>울산광역시 문화원 연합회</td> <td>남구 변영로 224</td> <td>268- 2971</td> <td>www. ulsanmunhwa. com</td> </tr> <tr> <td rowspan="4">지역</td> <td>중구문화원</td> <td>중구 새즈문해거리 37</td> <td>244- 2007</td> <td>http://www. munhwa21.org</td> </tr> <tr> <td>남구문화원</td> <td>남구변영로 2241층</td> <td>266- 3786</td> <td>www.wng518.kr</td> </tr> <tr> <td>동구문화원</td> <td>동구화진6길 4.1층</td> <td>251- 2261</td> <td>www.udcc.or.kr</td> </tr> <tr> <td>울주문화원</td> <td>울주군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td> <td>229- 8406</td> <td>www.uju.or.kr</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홈페이지	대표	울산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남구 변영로 224	268- 2971	www. ulsanmunhwa. com	지역	중구문화원	중구 새즈문해거리 37	244- 2007	http://www. munhwa21.org	남구문화원	남구변영로 2241층	266- 3786	www.wng518.kr	동구문화원	동구화진6길 4.1층	251- 2261	www.udcc.or.kr	울주문화원	울주군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	229- 8406	www.uju.or.kr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관명</th> <th>주소</th> <th>문의 (052)</th> <th>홈페이지</th> </tr> </thead> <tbody> <tr> <td>대표</td> <td>울산광역시 문화원 연합회</td> <td>남구 변영로 224</td> <td>268- 2971</td> <td>www. ulsanmunhwa. com</td> </tr> <tr> <td rowspan="4">지역</td> <td>중구문화원</td> <td>중구 문화의거리 37</td> <td>244- 2007</td> <td>http://www. munhwa21.org</td> </tr> <tr> <td>남구문화원</td> <td>남구변영로 2241층</td> <td>266- 3786</td> <td>www.wng518.kr</td> </tr> <tr> <td>동구문화원</td> <td>동구화진6길 4.1층</td> <td>251- 2261</td> <td>www.udcc.or.kr</td> </tr> <tr> <td>울주문화원</td> <td>울주군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td> <td>229- 8406</td> <td>www.uju.or.kr</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홈페이지	대표	울산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남구 변영로 224	268- 2971	www. ulsanmunhwa. com	지역	중구문화원	중구 문화의거리 37	244- 2007	http://www. munhwa21.org	남구문화원	남구변영로 2241층	266- 3786	www.wng518.kr	동구문화원	동구화진6길 4.1층	251- 2261	www.udcc.or.kr	울주문화원	울주군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홈페이지																																																			
대표	울산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남구 변영로 224	268- 2971	www. ulsanmunhwa. com																																																			
지역	중구문화원	중구 새즈문해거리 37	244- 2007	http://www. munhwa21.org																																																			
	남구문화원	남구변영로 2241층	266- 3786	www.wng518.kr																																																			
	동구문화원	동구화진6길 4.1층	251- 2261	www.udcc.or.kr																																																			
	울주문화원	울주군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	229- 8406	www.uju.or.kr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 (052)	홈페이지																																																			
대표	울산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남구 변영로 224	268- 2971	www. ulsanmunhwa. com																																																			
지역	중구문화원	중구 문화의거리 37	244- 2007	http://www. munhwa21.org																																																			
	남구문화원	남구변영로 2241층	266- 3786	www.wng518.kr																																																			
	동구문화원	동구화진6길 4.1층	251- 2261	www.udcc.or.kr																																																			
	울주문화원	울주군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	229- 8406	www.uju.or.kr																																																			
온가족 보듬사업	101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온가족 보듬사업 사업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7가지 가족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대상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 (한)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 가족센터(총 36개소) 이용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6) 울산남구가족센터 (☎052-274-3136) / 주소 																																																				

<p>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p>	<p>102</p>	<p>-</p>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명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u> • <u>사업설명</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관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원</u> • <u>대상 : 아래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u> - <u>우울형 자살 고위험군</u> • <u>내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방문상담, 집단활동,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u> - <u>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u> • <u>방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복지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u> • <u>문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u> - <u>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행정복지센터</u>
-------------------------------------	------------	----------	--

VI. 법률 지원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법률구조 제도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25% (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 (4인 기준 768만 1,620원) 이하 농어업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25% (4인 기준 <u>675만 1,205원</u>)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 (4인 기준 <u>810만 1,446원</u>) 이하 농어업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105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VII. 정신건강 지원

구분	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센터명</th> <th>주소</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광역</td> <td>울산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td> <td>울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2층</td> <td>052)716-7199</td> </tr> <tr> <td>울산광역시 자살예방 센터</td> <td>울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3층</td> <td>052)716-7199</td> </tr> </tbody> </table>	구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광역	울산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2층	052)716-7199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3층	052)716-7199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센터명</th> <th>주소</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광역</td> <td>울산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td> <td>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td> <td>052)716-7199</td> </tr> <tr> <td>울산광역시 자살예방 센터</td> <td>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td> <td>052)716-7199</td> </tr> </tbody> </table>	구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광역	울산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	052)716-7199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센터	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	052)716-7199
		구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광역	울산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2층	052)716-7199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 빌딩 3층	052)716-7199																						
구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광역	울산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	052)716-7199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센터	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	052)716-7199																						

- 부록 1_종사자를 위한 치매정보 활용 안내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삭제
- 부록 2_울산광역시 유관기관 현황: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공지
 - 확인방법 : 홈페이지(ulsan.nid.or.kr)>정보>자료실
 - 목록 안내(2024.1.31.기준)

구분	기관유형	자료출처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① 중구청: www.junggu.ulsan.kr ② 남구청: www.ulsannamgu.go.kr ③ 동구청: www.donggu.ulsan.kr ④ 북구청: www.bukgu.ulsan.kr ⑤ 울주군청: www.ulju.ulsan.kr
2	치매안심센터	① 중구: ulsanjunggu.nid.or.kr ② 남구: ulsannamgu.nid.or.kr ③ 동구: ulсандonggu.nid.or.kr ④ 북구: ulsanbukgu.nid.or.kr ⑤ 울주군: ulju.nid.or.kr
3	시·군·구청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seniorro.or.kr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울산광역시청 보훈노인과 자료 공유
8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광역: www.usmind.or.kr ② 기초 (중구): www.junggumental.or.kr (남구): www.usmhc.or.kr (동구): www.usdmental.com (북구): www.bukgumental.or.kr (울주군): www.ujcmhc.or.kr
9	푸드뱅크, 푸드마켓	전국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10	경로식당	울산광역시청 보훈노인과 자료 공유
11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12	상담지원센터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www.wel4u.or.kr

13	노인요양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14	주야간보호센터	
15	방문요양, 방문목욕	
16	치매전담실 (가형나형/주야간보호 내/공동생활가정)	
17	복지용구사업소	
18	울산광역시 치매극복선도단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자료 공유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이란? 치매친화적 사회조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양성 및 관리 중인 단체·개인사업자
19	울산광역시 치매안심가맹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 확인 : www.longtermcare.or.kr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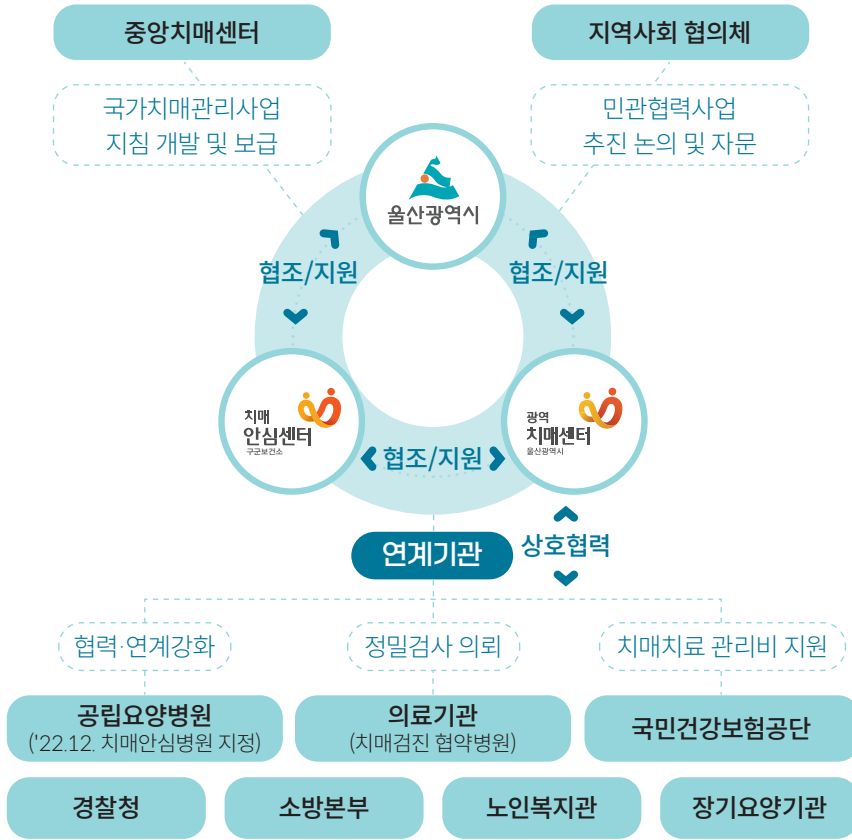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I. 치매전달체계_기관별 역할 안내

- 광역지자체(울산광역시)
- 광역치매센터
- 기초지자체(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II.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I. 치매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안내



추진주체	역할
광역지자체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지역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관리·지원 ·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 및 지원
광역치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 지역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 치매전문인력 증하자 교육 ·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후보자 관리, 사업 담당자 교육지원 등 · 지자체 내 치매 예방·치료 관련 기관 연계체계 마련 ·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지원 ·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기초지자체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치매안심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지원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 사례관리(케어플랜), 자원연계 계획 수립 및 실시 · 치매환자쉼터 운영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치매공공후견사업 실시 (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감독 등)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II. 울산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운영 현황

구분	기관명	위치	주소	연락처(052)	비고
1	울산광역시청	남구	남구 중앙로 201	-	-
2	울산광역시치매센터	중구	중구 태화로240, 동강병원 남관 5~6층	241-1591	-
3	중구치매안심센터	중구	중구 외솔큰길 225 중구보건소 2층	290-4366	-
4	남구치매안심센터	남구	남구 삼산동 1538-4 남구보건소 별관	226-2323	-
5	동구치매안심센터	동구	동구 봉수로 155 동구보건소 1층	209-4060	-
6	북구치매안심센터	북구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1~2층	241-8257	-
7	울주군치매안심센터	울주군	울주군 웅촌면 은현작동로 49	204-2878	-
8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주군	울주군 온양읍 덕남로 243	231-7900	치매 안심병원

CHAPTER 02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서비스

I. 공통 서비스

- 01. 등록관리
- 02. 치매조기검진

II. 치매 고위험군 서비스

- 01.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 02. 치매예방교실 운영
- 03. 인지강화교실 운영

III.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 0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02. 조호물품 제공
- 03. 실종어르신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 0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사업
- 05. 치매공공후견
- 06. 치매환자쉼터

IV. 치매환자 가족지원 서비스

- 01. 가족교실 운영
- 02. 자조모임 운영
- 03. 힐링프로그램
- 04.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I. 공통서비스

01 등록관리

- 목적**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어르신 혹은 고위험군, 정상 어르신의 삶의 질 증진
 - 치매어르신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대상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유형**
- (대상자)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정상, 진단미정(치매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보호자)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의 가족, 후견인, 가족 후견인 외 보호자(친구, 이웃, 간병인 등)
 - * 한명의 등록자가 '대상자'와 '보호자'로 중복등록 가능

- 등록 시 구비서류**
- 신청서(센터 내 비치) : 보호자 대리신청 시 치매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치매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약 처방전 및 진단서(치매진단 확인용)

- 등록절차**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미동의 시 등록 불가) / 처방전 확인
 - * 치매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 가능한 약제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② 추가서류 필요여부 검토
 - ③ 등록완료 후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리 신청 일 경우

구분	신청가능범위	구비서류(공통: 위임장, 신분증)
치매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관계가 확인 가능한 후견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대상자가 입원 및 입소한 병원, 시설의 재직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본인 재직증명서 및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치매환자의 입원/입소확인서
가족·후견인 외 보호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웃, 치매안심센터 직원 등 그 밖의 관계인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 2020년 7월 1일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예: 치매어르신 주소지는 경주이나 자녀가 거주하는 울산지역 치매안심센터 등록 가능.
단, 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어르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희망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으며, 다중센터 이용불가

02 치매조기검진

목적

-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 완화에 도움
-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상담 등 집중 검사 및 관리가 필요

1) 일반 조기검진 사업

• 검진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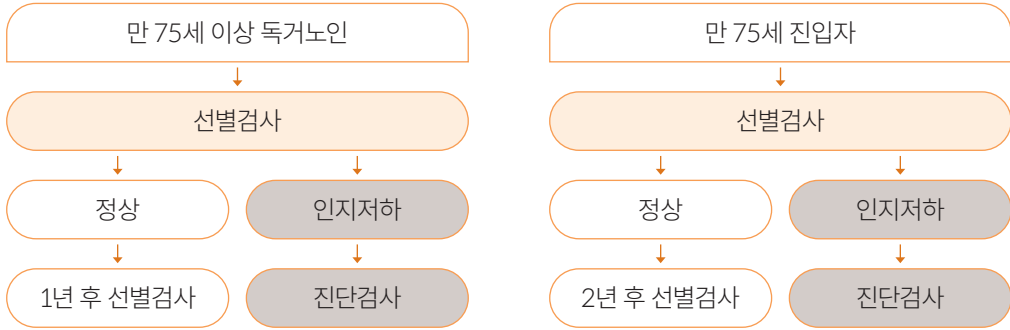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시민

• 수행절차



2)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 수행절차



• 검진대상

- 당해연도 만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 당해연도 주민등록상 만 75세에 진입한 어르신

• 검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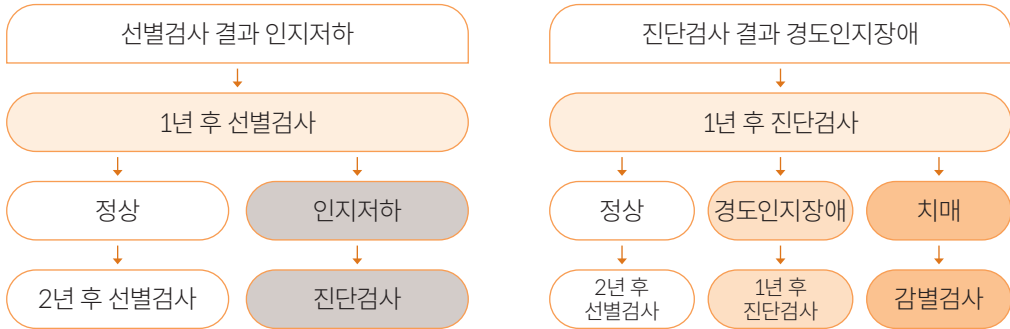
- 선별검사를 실시한 다음 해 선별검사 재실시

* 전년도 선별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당해연도 집중검진 대상자일 경우 선별검사 실시

II. 치매고위험군 서비스

01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수행절차



대상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되었으나 1년 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
-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으로 검진결과를 받은 자

검진주기

- '인지저하' 자는 선별검사 실시한 다음 해 선별검사 재실시
- '경도인지장애' 자는 진단검사 실시한 다음 해 진단검사 재실시
- * 대상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 주기 조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의심' 자는 선별검사 실시

02 치매예방교실 운영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장소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등

내용

치매예방 관련 교육 콘텐츠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실시 등

03 인지강화교실 운영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고위험군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
장소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등
내용	인지훈련을 위한 워크북 및 콘텐츠 활용 교육, 사전·사후 평가 실시 등

Ⅲ.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0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예) 9/10 경 90일분의 약을 8만원에 구입했을 경우
9/10~12/11까지 처방된 9월~12월(4개월)의 상한금액인
12만원(4만원X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은 신청 받은 월의 다음 월까지만 가능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확보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신청 - 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대상자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
- 장소 : 치매안심센터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센터내 비치)'와 해당 구비서류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가능
-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후 대상일 경우 지원 가능

구비서류

1.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2.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3.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4.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02 조호물품 제공

목적	치매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어르신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어르신 <u>※재가 치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1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 해당 입소시설 지원 물품과 중복지원 불가</u>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제공품목 (총 13품목)	인지강화/인지재활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 변기 ➔ 지자체별 제공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03 실종어르신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목적 실종 어르신 발생 예방 및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0, 제55조의4,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1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세부내용

• 지문 등 사전등록

내 용 치매어르신 등 실종 후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대 상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 치매어르신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등

문 의 경찰청(182)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내 용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 후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표식으로 옷 등에 부착하는 형태

대 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문 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안심센터

• 배회감지기 보급 [행복GPS]

내 용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21~'24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치매어르신과 인지저하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

대 상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및 인지저하자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

문 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안심센터, 경찰청(18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보급

내 용 치매어르신 등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GPS형, 매트형)

대 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 불가)

신청장소 복지용구사업소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04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목적	치매어르신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체계적으로 개입·중재함으로써 안정적 지역사회 거주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상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
내용	대상자 상황에 따라 개입 시기가 상이하며,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지원
문의	치매안심센터

05 치매공공후견

추진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목적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참고 | 성년후견제도란?

-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유형)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후견인의 역할)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등

* 법원에서 결정되는 후견유형에 따라 역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특정후견(3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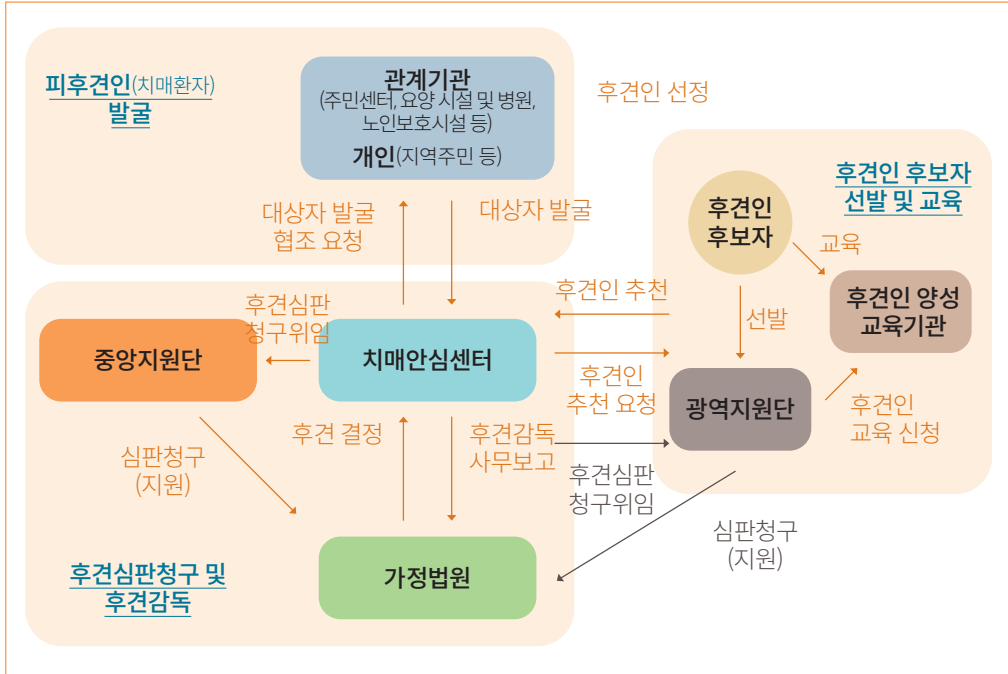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필요
행위 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제한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 권한	포괄적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비고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종료 심판까지 지속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종료 심판까지 지속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특정후견기간(3년) 만료 시까지 지속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및 후견인 교육, 지침마련 등
- 중앙지원단 : 후견심판 청구지원 및 법률자문, 후견업무 관리감독 지원 등
- 광역지원단 :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관리·교육, 인력풀 관리,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
- 치매안심센터 :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심판청구, 후견감독 등

업무 흐름도



대상 (일반정보)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치매어르신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가능
 (육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타) 공공후견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문의 (후견인 지원) 광역치매센터 / (치매어르신 발굴 및 연계) 치매안심센터

06 치매환자실터

- 목적**
- 치매어르신의 치매중증화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인지자극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 치매어르신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센터 이용을 통해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
 - 낮 시간 동안 경증치매어르신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 내용**
- 효과 검증된 인지자극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실시 등

IV. 치매환자가족 지원 서비스

01 가족교실 운영

목적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 바탕의 가족교육을 통해 치매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향상
대상	- 치매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장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및 분소
내용	1) 참여인원 : 10명 이내 2) 프로그램 : 헤아림 가족교육(총 8회기) 3) 사전·사후 평가 실시

02 자조모임 운영

대상	- 치매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가족 및 보호자
장소	- (오프라인) 치매안심센터 내외 등 (온라인)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https://www.nid.or.kr) - 지원 - 우리동네 자조모임
내용	온/오프라인 자조모임을 통해 치매관련 기사 및 정보 공유, 정서적 교류 등

03 힐링프로그램

대상	- 치매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치매어르신 동반 참여 가능)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경도인지장애자 동반 참여 가능)
장소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내용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내/외부 프로그램 실시

04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대상	- 가족 및 보호자가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어르신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장소	치매안심센터 본소
내용	대상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내부 사업팀과 협의 후 운영

CHAPTER 03

노령층 지원 복지 서비스

I. 생활지원

01. 기초연금제도
02.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
03. 노후준비서비스
04.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05. 긴급복지 지원제도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0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08. 경로식당
09. 푸드뱅크, 푸드마켓
10. 정부양곡 할인 지원

II. 건강지원

01. 국가건강검진제도
0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0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0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05. 노인틀니 지원
06.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0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0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0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III. 고용·일자리 지원

0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0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04.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0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0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IV. 돌봄 지원

0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02.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0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06.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07.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 도우미, 행복 나눔이_가사 도우미)

V. 사회참여 지원

01. 어르신 정보화 교실
02. 디지털 배움터
03. 노인복지관 이용
04. 경로당 이용
05.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06. 온가족 보듬사업
07.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VI. 법률 지원

01. 법률구조 제도
0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03. 무료법률상담
04. 성년후견제도

VII. 정신건강 지원

01. 정신건강복지센터
0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I. 생활지원

생활지원
01

기초연금제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 1. 추진근거**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며,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변경
- 2.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3. 내용**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월 최대 33만 4,810원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4.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로 신청
- 5.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미산정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능

변경사항!

-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적용
▶ ('23년) 108만원 → ('24년) 110만원

※ 울산지역 문의기관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중구, 동구, 북구) 052)290-6100
- 남울산지사(남구, 울주군) 052)226-2200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1.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사람
- 국민연금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정지 또는 총당 중인 사람
- 장애 4급 수급자, 국민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 생활 수급자**

• 대부 취소 사유(이 경우 즉시 전액 상환 필수)

- 제외대상 해당 여부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및 공기업 공문 및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개시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 변동자는 임대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 때 허위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 *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은 사람은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 간 노후 긴급 자금 대부가 제한
 - * 부부간(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및 비속 간 임대차 계약은 불인정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여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은 면책되지 않으며, 연금급여에서 공제

2. 내용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혜택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단,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일 경우 연간 수령액은 600만원이 되며,
 연금수령액의 2배는 1,200만원이지만 최대 1,000만원 한도이므로
 1,000만원 대출 가능

4. 방법

- 1) 신청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2)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5. 제출서류

(공통) 대부신청서 및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용도별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전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 계약금 은행 송금 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_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 재대부자)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계약서 등
의료비	- 진료비 계약서·영수증(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
배우자 장례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등
재해 복구비	- 피해 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6.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울산지역 문의기관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중구, 동구, 북구) 052)290-6100
- 남울산지사(남구, 울주군) 052)226-2200

노후준비 서비스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생활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와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체계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제공

2. 내용

* 노후준비 지원법이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2015년 제정. 이때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

구분	지원 세부내용
진단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상담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 보완을 위한 영역별 실천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관계기관 연계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상담 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 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3.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 컨설턴트)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 제공 중!

울산지역 문의기관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중구, 동구, 북구) 052)290-6100
- 남울산지사(남구, 울주군) 052)226-2200

생활지원
04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 감면 및 지원

• **교통비** : (공통)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원내용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신청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문의 코레일 ☎1544-7788

지원내용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신청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문의 대한항공 ☎1588-2001

지원내용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신청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문의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문화활동비**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신청방법 입장 시 신분증 제시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지원내용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 만원 이하	9,000 만원 이하	1억 3,500 만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지원대상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지원내용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이동통신통신요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
(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요금 감면 동시 신청

- ①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② 온라인신청 : 복지포털(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①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② 온라인/전화신청
 - 복지포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 전용 ARS(휴대전화☎1523), 고객센터(휴대전화☎114) 신청

• 각종 공공요금

지원대상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시설에서 신청	시설에서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산업통산자원부 ☎1577-0900	한국전력공사 ☎123	환경부 ☎1577-8866

생활지원
05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을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 1억 6,500만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2. 내용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지 원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만 3,5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원/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차년도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원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없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및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1년 7월 1일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변경사항!

-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울산지역 문의기관

- 중구청 복지지원과(☎052-290-4495)
- 남구청 복지지원과(☎052-226-6914)
-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06)
- 북구청 복지정책과(☎052-241-7633)
- 울주군청 복지정책과(☎052-204-0844)

생활지원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은퇴를 앞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통해 유용한 금융지식 및 생활정보 제공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방법 개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하면 해당부분을 선택하여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상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방법 :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은퇴금융] 채널
- 교육과정 : 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

생활지원
0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지지를 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

1. 대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등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2.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3. 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기준으로 선정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와의 개입 기간 결정
4.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제공
5.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식당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향상 기대

1.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2.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무료), 기타(1식 1,000원)
3.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접수
4.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지역 문의기관

- 중구청 복지지원과(☎052-290-4495)
- 남구청 복지지원과(☎052-226-6914)
-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06)
- 북구청 복지정책과(☎052-241-7633)
- 울주군청 복지정책과(☎052-204-0844)

• 울산지역 경로식당 운영현황

* 2024.1.31.기준

지역명	전체	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개소수	36개소	1개소	12개소 (2024년 9월 1개소 추가)	7개소	5개소 (2024년 1월 1개소 추가)	3개소	8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대상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60~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내용 : 지역별 운영단체에서 대상자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건강 및 영양상태·육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
09

푸드뱅크, 푸드마켓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1. 대상 복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 차상위계층, 결식자 등)
2. 내용 푸드뱅크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일괄 배분
 푸드마켓 : 대상자 직접 방문 이용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 이용 불편자들을 위한 재가 택배 서비스 확대
3. 방법 해당 지역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와 상담 후 푸드뱅크 · 마켓을 통해
 기부식품 등 이용 가능
4.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지역 문의기관

- 푸드뱅크 콜센터(☎1688-1377)
- 울산광역시푸드뱅크(☎052-285-1378 / 052-286-5412)

• 울산지역 푸드뱅크 · 푸드마켓 운영현황

지역명	전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푸드뱅크	8곳	3곳	2곳	1곳	2곳	-
푸드마켓	5곳	-	1곳	-	-	4곳

생활지원
10

정부 양곡할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2. 서비스 내용 :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

연산	단량	대상	양곡대금(개인부담)
'21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0원

II. 건강지원

건강지원
01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1.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주기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기본적으로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시행)	2년마다 1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1) 공통검사항목 : 비만, 시각·청각 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2)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2년마다 1회 (검진내용마다 검사항목은 상이)																												
	<table border="1"> <thead> <tr> <th>검사항목</th> <th>시기</th> <th>검사항목</th> <th>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총콜레스테롤</td> <td>남성 24세이상, 여성</td> <td>인지기능장애</td> <td>66세 이상 2년 1회</td> </tr> <tr> <td>HDL콜레스테롤</td> <td>40세 이상 4년 주기</td> <td>정신건강검사 (우울증)</td> <td>20~70세 (10년 1회)</td> </tr> <tr> <td>트리글리세라이드</td> <td></td> <td>생활습관평가</td> <td>40~70세</td> </tr> <tr> <td>LDL콜레스테롤</td> <td></td> <td>노인신체기능</td> <td>66세,70세, 80세</td> </tr> <tr> <td>B형간염</td> <td>40세</td> <td>치면세균막검사</td> <td>40세</td> </tr> <tr> <td>골밀도검사</td> <td>54세, 66세(여성)</td> <td></td> <td></td> </tr> </tbody> </table>		검사항목	시기	검사항목	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이상,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1회	HDL콜레스테롤	40세 이상 4년 주기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70세 (10년 1회)	트리글리세라이드		생활습관평가	40~70세	LDL콜레스테롤		노인신체기능	66세,70세, 80세	B형간염	4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골밀도검사	54세, 66세(여성)		
	검사항목		시기	검사항목	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이상,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1회																									
	HDL콜레스테롤		40세 이상 4년 주기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70세 (10년 1회)																									
	트리글리세라이드			생활습관평가	40~70세																									
	LDL콜레스테롤			노인신체기능	66세,70세, 80세																									
	B형간염		4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골밀도검사	54세, 66세(여성)																													
위암	40세 이상의 남녀(검사항목: 위내시경검사) * 단, 검사가 어려울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2년마다 1회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검사항목: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양성, C형간염항체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마다 1회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검사항목: 분변잠혈검사,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 검사/단,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1년마다 1회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검사항목: 유방촬영술)	2년마다 1회
폐암	54~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 (검사항목: 저선량 흉부CT검사)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_갑X흡연기간_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폐암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됨	2년마다 1회

2.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지원
0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 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

1. 대상
 - 노인 안 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2. 내용
 - 노인 안 검진
 - 1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 등
3. 선정기준
 - 노인 안 검진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 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된 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노인 개안수술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4. 방법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 작성 후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연중수시
5. 구비서류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수술한 병원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6.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를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장애 및 사망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서비스

1. 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 (고혈압·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3. 방법

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예방과(☎043-719-7441)

? 자주하는 질문!

-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울산지역 문의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052-292-4400)
- * 중구 태화동 소재!

건강지원
0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 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비스

1.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무릎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3. 방법
 -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www.ok6595.or.kr)

노인 틀니 지원

저소득층 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서비스

- 1.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완전틀니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 | 본인부담률 | |
|---------|---------|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5% | 15% |
-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4.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 5.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잘 때는 꼭 빼주세요.
 -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건강지원

06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의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

-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 | 본인부담률 | |
|---------|---------|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10% | 20% |
-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4. 필요서류**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 5.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자체(보건소)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1. 대상

지역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 예방(절주)
- 신체활동
- 영양
- 비만 예방관리
- 구강 보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여성어린이 특화
- 지역사회중심 재활
- 금연
- 방문 건강관리
- 치매관리

3. 방법

보건소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지원
0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서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 내용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가 백신(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매년 10월경)

3. 방법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 자주하는 질문!

•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건강보험 대상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대상 암종	전체암종	[5대 암종]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원발성 폐암(C33.0 - C34.9)
선정 기준	당연선정	- 암진단일 2년 이내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 - 국가암검진을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수검한 대상자만 해당 - <u>2022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u> · 직장가입자 110,100원이하 · 지역가입자 104,500원이하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받은 암환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u>2022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u> · 직장가입자 110,100원이하 · 지역가입자 104,500원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한도	급여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한도

지원 항목	- 급여 본인 부담금 - 비급여 본인 부담금 급여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 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 본인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_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최초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환자통장 사본 1부(보호자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암 진료와 관련된 진료비 영수증(원본/급여와 비급여 구분) - 약국 영수증 제출 시 약제비 영수증 및 동일날짜 처방전 - 타과 진료 시 암과 관련된 진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첨부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Ⅲ. 고용 · 일자리 지원

고용·일자리
지원
0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령자(60세 이상)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1.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인 중견기업은 기업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을 말함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 500인 ↓
 - 건설, 운수, 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보건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 300인 ↓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인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www.mme.or.kr>)의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고령자 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정년 연장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인 경우
- 신청 전 3개월 ~ 신청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게 한 경우

2. 지원요건

-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시작일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수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할 경우

※월 평균 고령자 수란?

- 매월 말 현재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 최초 1회차 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업

3. 내용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고, 몇 가지 조건과 신청 조건에 부합하다면 정부에서 분기마다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2년(8분기) 지원금액 : 총 240만원

※단,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지원이 최대 한도이며,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일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4. 방법

-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및 제출

-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해 신청

5.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 500인 ↓
 - 건설, 운수, 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보건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 300인 ↓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인 ↓
 - 기타업종 : 100인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www.mme.or.kr>)의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 기대효과

(근로자)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

(기업)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채용 비용 절감

2. 지원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제1항)

-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할 것

3. 내용

- 지원금액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하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한도로 지원

-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4.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5. 절차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변경신고 → 정년근로자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6.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강화 및 민간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1. 대상**
 - (참여자) :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단, 복지관, 학교, 도서관, 행정기관 대상인 일부 사업은 만 65세 미만 참여 가능)
 - (참여단체) : (예비)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법인 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 등
- 2. 선정방법**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
- 3. 지원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수당 지급
 -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
 - 담당업무 :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 근무기간 및 임금 :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23년 주 평균 32시간 근무 (월 평균 166만원)
- 4. 신청방법**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사업내용 및 참여자격 등 확인 후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
- 5.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울산지역 문의기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고용센터(☎052-228-1919)

고용·일자리
지원
04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 또는 민간에서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월급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사업

1. 목적 취업취약계층과 은퇴 후 취업이 어려운 자 지원
2.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3. 지원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
4. 신청방법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
오프라인 신청
5.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 1. 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3년 이내 (예비) 창업자
- 2. 내용** 예비 창업자 발굴 및 교육·보육 등 창업 전주기 지원

구분	지원내용
발굴	대기업·공공기관 퇴직자 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중장년을 적극 발굴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중장년의 창업 역량 강화
공간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센터 입주·졸업 기업 대상 네트워킹,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한 중장년 창업기업 성장지원

- 3. 절차**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입주기업 모집공고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신청 → 입주기업 선정평가 → 입주지원(공간, 교육 등)
- 4. 참여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전국 27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사무공간(지정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평가→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필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활동계획서, 대표자이력서(자유양식) 등
- 5.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www.k-startup.go.kr)

※ • 울산지역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현황

주관기관	협력기관	유형	주소	연락처
울산 동구청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8, 8층	052)209-1510
울주군청	(재)울산테크노파크	단독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울주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052)277-1996

고용·일자리
지원
0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1. 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 대상	내용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역사회 공익증진 프로그램 참여 * 월 30시간 이상, 29만원 활동수당 - 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60세 이상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u>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프로그램(월 60시간, 월급여 최대 63만 4,000원_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u> - 활동: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u>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 에서 활동(식품제조·판매, 매장운영, 택배 등)</u>
	취업 알선형	60세 이상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u>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u>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u>민간기업 취업지원(기업인턴 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u>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 <u>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 기업 지원(인증형, 창업형)</u>

2.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3.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알려드립니다

-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 기회를 잡으세요!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참여기업 자격요건: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 파견직 참여 등 제외)
- 참여자(근로자) 자격요건: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보험 이중취득자 등 제외)
- 지원내용: 시니어근로자 1명 채용 시 최대 520만원(인턴지원금+채용지원금+장기취업유지
지원금) 지원 가능
- ①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최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내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 간 월급여의 50%,
최대 40만원 내 지원
- ②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근로유지기간 - 18개월 · 24개월(80만원 지급) / 30개월 · 36개월(60만원 지급)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담당(☎1577-1923)

? 자주하는 질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2024년 변경사항!

- 대상연령 : 50세 이상 65세 미만
- 수행기관 : 자치단체만 수행

※ 울산지역 문의기관

- 한국노년인력개발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70-4372-3063)

IV. 돌봄 지원

돌봄 지원 0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상이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3. 접수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별 지원
02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 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2. 내용** - 학대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어르신 및 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어르신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학대행위자 대상의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그 밖에 학대받은 어르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명	사업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연계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	- 노인학대예방교육 - 노인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홍보사업	- 노인인식개선 홍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학술행사, 캠페인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 이동상담

-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4.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 ☎112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 어르신 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울산지역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운영	울산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구 다운로 121(새마을금고 3층)	052)265-1389
이용	학대피해 노인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어르신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학대피해어르신 대상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료비 지원 - 학대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 	

돌봄 지원
0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한 복지 서비스

1.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

2. 신청기간

연중 수시

3. 내용

-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설치를 통해 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한 후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서비스(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 설치장비
 - 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119)로 연결
 - 활동량감지기 :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
 - 출입감지기 :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림
 - 응급호출기 :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119)로 연결
 - 게이트웨이 : 119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태블릿 일체형)
- 제공기능
 - [음성기능]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
 - [인공지능케어콜서비스]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함
- 제공방식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 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 파악,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
 - 안전 확인 시 부재중 등으로 미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4. 절차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대상자 승인→택내장비 설치→서비스 제공→서비스 종결

5.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7번/1번)

돌봄 지원
0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_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정부지원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www.mois.go.kr),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23.4.1.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 부터 이용가능

※ 울산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현황

구분	지사명	주소	연락처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울산중부지사	중구 구교로 41	1577-1000
	울산남부지사	남구 삼산로 35번길 26	
	울산동부지사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회관 4층	
	울주지사	남구 북부순환도로 23, 2층(행정지원팀외)/ 4층(보험급여팀 외)	

돌봄 지원
0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II

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

-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필요

●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8%/공단 92%		
본인부담금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공단 91%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12%/공단 88%		

- 3. 등록 및 감경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 후 직권으로 감경 적용
* 단,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 처리과정
① 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해지(수급자) → ② 보험료 부과자료 등 조정(건강보험) → ③ 감경 신청서 제출(관할 운영센터) → ④ 해당요건 확인(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 → ⑤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 ⑥ 감경 적용 시 환급(수급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등 제출
-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 서비스'가 2021년 전국 65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 약 2,4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가족상담전문요원과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에 필요한 보조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서비스

1.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2. 서비스내용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2가지가 있으며,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해 지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 지원

3.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7.5%	면제

•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e-BOOK

<http://aii.co.kr/hosting/company/nhis2/ebook.html>











4.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기관 검색
→ 복지용구 검색
 - ② 신청 방법 : 복지용구 사업자에게 필요 보장구 신청
(장기요양급여 인정 확인서 제출)
 - ③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④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 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 ⑥ 서비스 지원 및 사후 지원 : 대상자 서비스 지급 후 대상자 상황 관련 사항
관리

5. 대여 및 구입 품목

대여가능 품목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름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이동목조(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목조		목욕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경사로(8년)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가능 품목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이동변기(5년)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수비하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이동식 변기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외상상태이거나 용변조절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간이식 변기
	지팡이(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6. 복지용구 공급업체 정보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급업체 정보검색

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알려드립니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돌봄 지원
07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가사도우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1. 대상

1)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 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2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위 경우 입원 및 치료를 받은 병·의원이 확인되어야 함

2)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

2. 내용

- 1)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60,000원)의 70%인 42,000원을 국고로 지원(30% 자부담)
- 2)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인건비(70,000원)의 70%인 49,000원을 국고로 지원(30% 자부담)

3. 방법

- ①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 확인
- ③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④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및 서비스 제공

4. 중복불가 지원사업

재가급여,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5. 신청장소

각 지역 농협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문의

-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02-2080-5566)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콜센터(☎02-2080-5412)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V.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 지원

01

어르신 정보화 교실

고령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생활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

1. 대상 스마트폰 또는 PC 관련 교육수강을 원하는 자(제한 없음)

2. 교육비 회원제 운영

3. 내용

구분	컴퓨터과정	동영상편집과정	스마트폰활용과정	기타
강의 내용	인터넷기초/ 중급, 한글, 엑셀, PPT, 문서작성	사진, 포토샵, 동영상, UCC	스마트폰의 이해 및 각종 앱 활용방법	유튜브 및 키오스크 활용법
강의 시간	월~금요일(초, 중급)	주 3회	주 2회	수시

4. 방법 교육관련 각 지역지부 문의 후 신청

5. 문의

- KWIC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02-2636-2990)
- KWIC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부산지부(☎051-711-8254)

사회참여 지원

02

디지털 배움터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역량강화 기회 제공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

3.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4.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사회참여 지원

03

노인복지관 이용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1. 대상 울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내용 * 세부내용은 복지관마다 상이하므로 이용하고자하는 복지관에 문의 필수!
 - 기본사업 : 평생교육, 취미여가, 고용지원, 정서생활, 사회참여, 경로당 혁신프로그램 등
 - 선택사업 : 건강생활, 주거지원, 가족기능, 가족통합, 지역복지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3. 방법 노인복지관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등록, 프로그램 신청
4. 문의 이용을 희망하는 거주지 인근 노인복지관 : 아래 표 참고!

※ • 울산지역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소재지	기관명	주소	문의(052)	
			전화	팩스
중구	중구노인복지관	중구 해오름2길 50	707-0770	707-0774
	함월노인복지관	중구 종가3길 15	716-7211	716-7210
남구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남구 삼산중로 136	256-6820	256-6823
	도산노인복지관	남구 대암로 129번길 4	265-5221	275-9988
	문수실버복지관	남구 대학로 3-51	247-3740	277-2940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남구 선암호수길 150	268-6080	268-6072
동구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동구 명덕6길 33	252-2118	233-2118
	울산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동구 진성12길 120	716-0030	716-0070
	방어진노인복지관	동구 꽃바위로 356	700-4135	700-4134
	남목노인복지관	동구 안산들로 55	251-5100	252-5100
북구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북구 동대8길 40	296-3901	292-6080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	북구 새장터2길 11	296-3903	288-6080
울주군	서부노인복지관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	229-9100	229-9129
	남부노인복지관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256-6	229-9130	229-9159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어 높은 집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 1. 대상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누구나
- 2. 내용 - 여가 선용 및 휴게 공간 이용
 -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프로그램 - 노래, 체조, 요가교실 등
- 3. 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인근 경로당 방문

☎ 알려드립니다

- **경로당기능 활성화를 도와드립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 물리치료기, 비품 등 구입
- **경로당 운영을 지원해드립니다.**
 - 내용 : 경로당 관리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지원
 - 신청방법 : 경로당에서 해당 구군청으로 신청

※ 울산지역 문의기관

- 울산광역시청 보훈노인과(☎052-229-4872)
- 울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052-269-0025)
-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052-269-0026)

• 울산지역 경로당 운영지원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052)
노인 복지시설	울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11, 4층	269-0025
	대한노인회울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남구 거마로5번길 27	269-0026
공공기관	울산중구청(노인장애인과)	중구 단장골길 1	290-3686
	울산남구청(노인장애인과)	남구 돌질로 233	226-3083
	울산동구청(노인장애인과)	동구 봉수로 155	209-3438
	울산북구청(노인장애인과)	북구 산업로 1010	241-7194
	울주군청(노인장애인과)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204-0921

사회참여 지원

05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지역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및 소속감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1. 대상 이용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2. 내용 취약 지역*의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초기 노년층 60~74세/후기 노년층 75세 이상)하여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취약지역 : 소멸위험지역(118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3. 방법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문화원연합회(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4. 문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02-704-4332, 2321)

알려드립니다

-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 어르신의 욕구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 어르신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 어르신&협력프로젝트 : 어르신과 청년/어린이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만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등)의 찾아가는 공연

※ 울산지역 문의기관

-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052-268-2971

• 울산지역 문화원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문의(052)	홈페이지
대표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남구 변영로 224	268-2971	www.ulsanmunhwa.com
지역	중구문화원	중구 문화의거리 38	244-2007	www.munhwa21.org
	남구문화원	남구 변영로 224, 1층	266-3786	www.ng518.kr
	동구문화원	동구 화진6길 4, 1층	251-2261	www.udcc.or.kr
	울주문화원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1길 4-19	204-4033	www.ulju.or.kr

온가족 보듬사업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7가지 가족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1. 대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2. 내용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대상자 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만 15세 이하 자녀 대상 학습정서지원 - 만 18세 이하 (손)자녀 양육가족 및 노부모 부양 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 청소년(한)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미혼모·부 출산·양육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 원가정 회복지원,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긴급돌봄지원, 1인 가구 병원 동행 - 전문 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3. 신청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총 36개소)*신청

* (서울) 영등포구, 동대문구 / (부산) 수영구, 연제구 / (대구) 남구 / (인천) 계양구 / 대전광역시 / (울산) 남구 / (경기) 과천시, 안성시, 화성시 / (충북) 충주시 / (충남) 천안시, 홍성군 /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 (전남) 나주시, 영광군 / (경북) 상주시, 예천군 / (경남) 통영시, 창녕군 / (제주) 서귀포시

4. 문의

•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2024년 변경사항!

- 가족희망드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 울산지역 문의기관

- 울산남구가족센터(☎052-274-3136)
 ⇨ 울산 남구 여천로12번길 50, 해피투게더 타운 B1

사회참여 지원

07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원

1. 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어르신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 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르신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2.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노인복지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4.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VI. 법률 지원

법률 지원 01

법률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10만 1,446원) 이하 농·어업인
- 2.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만 가능),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 국민	유료	유료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 전신납북자 가족 / 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외국인 여성 포함) / 미혼부 / 소상공인 / 북한이탈주민 / 범죄피해자(재산) / 소액임차인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무료	무료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특수임부유공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학교폭력피해자 / 경찰·소방공무원 / 예술인			
- 소규모 중소기업인 / 의료사고피해자 / 국내거주 외국인 / 범죄피해자(신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소재 사업장) / 선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 한부모가족(취약계층) / 가족관계미등록자			
150% 이하	- 소년소녀가장 / 보호대상아동 / 한부모가족(양육, 인지)	무료	무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 /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150% 이하	농업인·어업인		
소득기준 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피구조자, 국선대리인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가슴기살균제피해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 홈페이지_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울산지역 문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052-257-4676)
- 울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052-257-4676)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1.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선정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 (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2. 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도움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4. 절차 ①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후 지원 결정 → ③ 서비스 실시
* 제출서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5. 문의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www.klac.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www.legalaid.or.kr/main/main.php)
- 피해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가정폭력)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www.lawhome.or.kr/law1/index.asp)
 - (성폭력)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www.rape119.or.kr)



※ 울산지역 문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052-257-4676)

법률 지원
03

무료법률상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서비스

- 1. 대상** 울산 시민
- 2. 내용**
- 민·형사 사건을 포함한 법률정보 및 행정처분 등
 -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 보조 등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자만 가능
 - 상담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 상담시간 : 평일 10시 ~ 17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상 담 관 : 변호사
 - 상담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052)257-4676
- 3. 신청방법**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접속 → 상단 카테고리 중 법률구조 검색
 - ② 법률구조 카테고리 내 상담방법 선택
* 상담방법 :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 ③ 상담 진행(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예약시간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 취소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이라면 방문 예약이 제한됨*

- ! 유의사항 : 상담제한조건**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예 :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 울산지역 문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052-257-4676)

성년후견제도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

! 도입배경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재산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며, 제도 이용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등 다수의 불편사항이 발생. 그리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도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도입

1. 대상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화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있는 성인

*** 정신적 제약이란? 중증치매 혹은 뇌손상, 발달장애, 정신분열, 의식불명 등**

2. 성년후견제도 종류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 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추후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음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임의후견 사례

-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 ▶ 자 녀 :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 아버지 : 본인이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가능

3. 청구방법

- 관할법원 : 울산가정법원(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법원청사 10층)
- 서비스비용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 발생
- * 법원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절차 비용 중 일부 지원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후견인 역할

-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 처리 진행. 이 때 피후견인 의사 존중 원칙!
- 재산관리 :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 행사 가능. 업무 범위는 후견종류에 따라 법원 심판 시 결정됨
 - 신상보호 :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 가능

※ 울산지역 문의기관

- 울산가정법원(☎052-216-8000)
- 울산가정법원 홈페이지(www.usfamily.scourt.go.kr)
- 후견인 활동 : 울산광역시매센터(☎052-241-1591)
- 피후견인 연계 : 치매안심센터

VII.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지원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 대상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과적 어려움 또는 자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누구나

2. 내용

I.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 정신질환자 발굴 및 등록 :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및 기타 정신장애인 발굴 및 등록을 통한 지속관리 서비스

① 사례관리

- 센터 회원 등록 후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② 가족교육

-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 약물증상, 스트레스관리, 가족역할 교육 및 가족서비스 제공

③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 지역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신사회적 재활프로그램 제공

II.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검사

-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유형에 따른 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내소, 전화, 방문, 홈페이지 내 사이버 상담 제공

②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프로그램 정신질환·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관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 우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실시

③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지역 내 홍보 활동 전개(정신건강의 날, 보건의 날 행사 등)
- 각종 정신건강책자 제공을 통한 정보제공

④ 정신건강환경조성

-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III. 자살예방사업

- ① 자살 고위험군 서비스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 :
자살위기자에 대한 지속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 ②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실시
- 생명존중의식 향상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 자살위기자 발굴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 ③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 ④ 생명존중마을 만들기 사업 아파트 및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조직화를 통한 생명존중 활동 추진
- ⑤ 자살수단차단 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 번개탄 판매인식개선 캠페인 및 생명사랑실천가게 연계 협약 추진

IV.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① 등록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인 면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문제를 관리
- ② 정신건강상담 및 심리평가
-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심리평가 실시(주의력 평가, 정서적 문제 평가, 인지기능 평가 등)
-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 비슷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또래들이 일상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 ④ 교육
- 학생,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적절한 대처법 교육

알려드립니다

- 위 사업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방법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 시설방문을 통한 상담/전화상담 → 상담 및 평가 → 서비스 동의 후 등록 → 개별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및 자원 연계

4. 문의

- 자살위기상담전화(☎1393)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 광역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관별 업무내용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기획: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를 통한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 중증정신질환 관리: 편견해소 사업, 24시간 위기관리 지원, 초발정신질환관리체계구축, 탈원화 전달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노숙정신질환관리
-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식개선 사업, 24시간 상담 및 지원,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고위험군 조기검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정신보건 환경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언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기획: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 중증정신질환 관리: 신규 발견체계 구축, 사례관리 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 증진사업: 홍보 및 교육사업,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어린이 청소년, 성인 우울증/스트레스,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알코올 중독)

※ • 울산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구분	센터	주소	연락처
광역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	052)716-7199
	울산광역자살예방센터	울산 북구 명촌10길 50, 3층	052)716-7199

구분	센터	주소	연락처
기초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 중구보건소 3층	052)292-2900
	울산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남구 삼산중로 132 남구보건소 별관	052)227-1116
	울산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동구 봉수로 155 동구보건소 3층	052)233-1040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052)288-0043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1길 67-12 울주군보건소 2층	052)262-1148

정신건강지원

0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

1. 대상 지역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도박, 인터넷, 약물)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가족, 주민

2. 내용

영역	서비스 내용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 신규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 사례관리/위기관리 서비스 · 재활 프로그램/자조모임지원 서비스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사례관리 서비스/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 위기관리 서비스/가족모임 지원 서비스
중독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중독 예방교육사업 · 직장인 중독피해 예방 지원 사업 ·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중독예방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법무 연계·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운영체계 구축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자원조정 및 중재

알려드립니다

- 각 관할 센터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니,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방법 전화상담, 센터방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등록 주소지가 중구·남구일 경우 각 지자체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동구·북구·울주군일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

- 4. 문의**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울산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구분	센터	주소	연락처
광역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 중구 태화로 216, 3층	052)245-9007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5층	052)275-1117

참고자료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발간

관련사이트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https://ulsan.nid.or.kr>
울산중구치매안심센터 <https://ulsanjunggu.nid.or.kr>
울산남구치매안심센터 <https://ulsannamgu.nid.or.kr>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https://ulsandonggu.nid.or.kr>
울산북구치매안심센터 <https://ulsanbukgu.nid.or.kr>
울산울주군치매안심센터 <https://ulju.nid.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콜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연계 자원현황 안내서 **개정판 2판**

발행일	2024. 04. 30.
발행인	김성률
편집인	김혜강
발행처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40, 동강병원 남관 5~6층
문의	Tel. 052)241-1591 / Fax. 052)241-1595
홈페이지	https://ulsan.nid.or.kr
디자인 및 인쇄	김스디디자인

이 책의 저작권은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 및 발췌하거나 무단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홈페이지



 @ulsanre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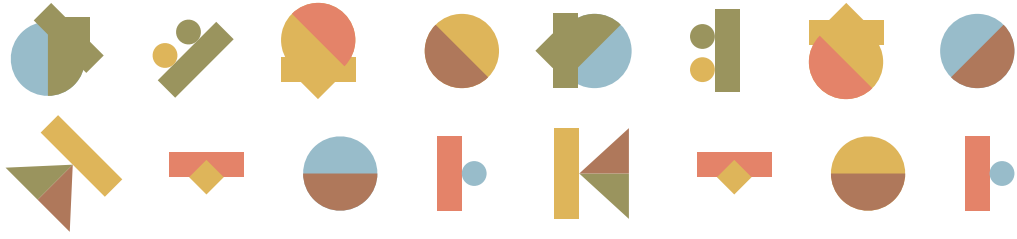
 Q울산광역시치매센터



 Qulsanremember



 Q울산광역시치매센터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연계
자원현황 안내서 개정판
2판

